

2012년도 국정감사계획서(안)

2012. 9. 12.

국회행정안전위원회

【 목 차 】

1. 감사의 목적	1
2. 감사기간	1
3. 감사실시 대상기관	1
4. 감사반의 편성	3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	5
6. 주요감사사항	7
7. 감사방법	7
8. 서류(자료)제출·보고·증인 등 출석 요구	7
9. 감사진행순서	9
10.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	9

2012년도 국정감사계획서(안)

1. 감사의 목적

헌법 제61조, 국회법 제127조,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, 2013년도 예산안·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.

2. 감사 기간

2012. 10. 5 (금) ~ 10. 24 (수) [20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

가. 위원회선정대상기관 (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~3호)

- 1) 중앙선거관리위원회
- 2) 행정안전부
- 3) 경찰청
- 4) 소방방재청
- 5) 지방자치단체
 - ① 서울특별시
 - ② 부산광역시
 - ③ 인천광역시
 - ④ 광주광역시
 - ⑤ 대전광역시
 - ⑥ 울산광역시
 - ⑦ 경기도
 - ⑧ 제주특별자치도

4. 감사반의 편성

가. 중앙감사반

○ 위원장, △ 간사
(새)새누리당, (민)민주통합당, (비)비교섭

대 상 기 관	감사위원장	감사위원	사 무 보 조 직 원	
중앙선거관리위원회	○김태환 위원장	△고희선 위원(새)	수석전문위원	이원탁
행정안전부		강기윤 위원(새)	전문위원	문강주
경찰청		김기선 위원(새)	입법조사관	이상현
소방방재청		박덕흠 위원(새)	"	김준규
서울특별시		박성호 위원(새)	"	박혜진
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		서병수 위원(새)	"	서덕교
제주특별자치도		유승우 위원(새)	"	이현경
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		윤재옥 위원(새)	"	김복현
공무원연금공단		이재오 위원(새)	"	양창석
한국정보화진흥원		진 영 위원(새)	"	김려진
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		△이찬열 위원(민)	"	전중인
한국지방행정연구원		김민기 위원(민)	입법조사관보	남정희
도로교통공단		김 현 위원(민)	"	조종오
지방공기업평가원		문희상 위원(민)	속기주무관	
		박남춘 위원(민)		
		백재현 위원(민)	정책연구위원	
		유대운 위원(민)	위원보좌진	
		임수경 위원(민)		
	진선미 위원(민)			
	이상규 위원(비)			
	김영주 위원(비)			

나. 지방감사반

(새)새누리당, (민)민주통합당, (비)비교섭

감사반	대 상 기 관	감사반장	감사위원	사 무 보 조 직 원	
제 1 반	부산광역시	김태환 위원장(새)	강기윤 위원(새)	수석전문위원	이원탁
	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		박덕흠 위원(새)	입법조사관	이상현
	울산광역시		서병수 위원(새)	"	서덕교
	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		윤재옥 위원(새)	"	박혜진
	인천광역시		이재오 위원(새)	"	김복현
	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		박남춘 위원(민)	"	김려진
			백재현 위원(민)	입법조사관보	조종오
			유대운 위원(민)		
			임수경 위원(민)		
			진선미 위원(민)	속기주무관	
	김영주 위원(비)	정책연구위원			
		위원보좌진			
제 2 반	대전광역시	이찬열 위원(민)	고희선 위원(새)	전문위원	문강주
	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		김기선 위원(새)	입법조사관	김준규
	경기도		박성효 위원(새)	"	이현경
	경기도지방경찰청		유승우 위원(새)	"	양창석
	광주광역시		진 영 위원(새)	"	전종인
	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		김민기 위원(민)	입법조사관보	남정희
			김 현 위원(민)		
			문희상 위원(민)		
			이상규 위원(비)	속기주무관	
				정책연구위원	
		위원보좌진			

※ 10월 19일 국감시 백재현(1반), 김현(2반) 위원 감사반 교대

※ 10월 19일 국감시 김영주(1반), 이상규(2반) 위원 감사반 교대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가. 중앙감사반

날 짜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	감사시간	감사방법
10. 5(금)	중앙선관위	국 회	10:00	현황보고 청취, 자 료 요 구, 질 의 등
10. 8(월)	행정안전부	정 부 중앙청사	10:00	"
10. 9(화)	경찰청	경찰청	10:00	"
10.10(수)	<국감자료준비>			
10.11(목)	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	시 청 시 경	10:00 15:00	"
10.12(금)	소방방재청	중앙소방학교 (천 안)	10:00	"
10.15(월)	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	도 청 도 경	10:00 15:00	"
10.16(화)	독도 시찰	독 도	09:00	"
10.17(수)	<국감자료준비>			
10.18(목) -22(월)	(지방감사)			"
10.23(화)	공무원연금공단, 한국정보화진흥원,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,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지방공기업평가원,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(7개 기관 병합 실시)	국 회	10:00	"
10.24(수)	행정안전부 경찰청	국 회	10:00	종합감사

나. 지방감사 제1반

날 짜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	감사시간	감사방법
10.18(목)	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	시 청 시 경	10:00 15:00	현황보고 청취, 자료요구, 질의 등
10.19(금)	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	시 청 시 경	10:00 14:00	"
10.22(월)	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	시 청 시 경	10:00 15:00	"

다. 지방감사 제2반

날 짜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	감사시간	감사방법
10.18(목)	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	시 청 시 경	10:00 15:00	현황보고 청취, 자료요구, 질의 등
10.19(금)	경기도 경기도지방경찰청	도 청 도 경	10:00 15:00	"
10.22(월)	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	시 청 시 경	10:00 15:00	"

6. 주요감사사항

- 2012년도 예산집행사항
- 2012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
- 2013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
- 소관기관 산하단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기타 현안문제 등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

7. 감사방법

-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, 자료제출요구, 질의·답변의 방법으로 실시하고,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.
- 특히, 지방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, 문제점, 애로·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,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중점을 두도록 함.

8. 서류(자료)제출·보고·증인 등 출석 요구

가. 서류(자료)제출요구

- 수감기관은 다음 서류(자료)를 해당기관 감사 5일 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.
 - 2012년도 업무현황
 - 2011년도 및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
 - 2011년도 및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
 - 201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

- 2011년도 및 2012년도 감사원감사 · 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
-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

나. 보고요구

-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, 보고시간은 10분 내외로 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시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함.
- 업무현황보고 내용
 - 예산집행현황
 - 주요정책(사업) 계획 및 실적
 - 주요현안

다. 증인·감정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

- 수감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국장급 이상의 부서장으로 함.
 - ※ 지방경찰청의 경우, 서울지방경찰청은 기관장과 부장급 이상, 기타 지방경찰청은 기관장과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, 공무원연금공단 등 산하단체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임원급 이상으로 함.
-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일반증인·감정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하여 증언·감정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.
-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 등에게 송달되어야 함.

9. 감사진행순서

- 감사개시 선언
- 위원장 인사말씀
- 증인선서
- 업무현황보고 청취(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)
- 질의 및 답변
- 감사종료 선언

10.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

- 결과보고서에는 일반사항(감사의 목적, 기간, 경과 등),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, 건의사항,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.
-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전체회의에서 채택함.